

포천노곡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2021)



포천노곡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포천노곡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본교 헌장과 학칙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7호, 8호, 9호의 학교규칙, 제 31조 학생의 징계 및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장 학교 교육공동체의 책무

제4조 【책무】 포천노곡초등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책무를 가진다.

1.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함께 협력해야한다.
2.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학생을 지도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3.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윤리 규정】

1. 포천노곡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교사들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교사 윤리 규정’으로 제정한다.
2. 포천노곡초등학교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 교육의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 교육의 한축을 맡아 그 역할을 수행하며 ‘학부모 윤리 규정’을 제정하여 지키도록 노력한다.

제6조 【학생 안전과 사생활 보호】

1.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 학생은 지정시간에 등교 하교를 해야 하며 학생이 있는 교실에는 교직원 또는 학생 보호를 책임 할 수 있는 자가 입회해야 한다.
3. 학교는 학생 사고로부터 보호 및 안전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와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4. 학교는 학생의 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설치 장소를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5. 교육활동과 학생안전 이외에 허가 없이 사진 촬영, 영상 녹화, 녹음 등을 하여 타인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상대의 허락이 없이 이를 유통시켜서도 안 된다.
6. 교직원은 일기장 등 개인의 개인적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 원칙으로 하며, 교육적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7. 학교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표현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교외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릴 의무와 상담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이 있을 시
2. 식습관 문제와 유해 매체(음란물, 폭력물, 게임) 중독 증상이 있을 시

제 3장 학생 생활

제1절 학생의 권리

제8조 【학생 인권】 포천노곡초등학교 학생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권적 권리를 가지며 세부사항은 조례를 참조한다.

1. 차별받지 않을 권리(조례 제5조)
2.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6조)
3.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조례 제7조)
4. 학습에 관한 권리(조례 제8조)
5.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있어 선택할 권리(조례 제9조)
6. 휴식을 취할 권리(조례 제10조)
7. 개성을 실현할 권리(조례 제11조)
8.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조례 제12조)
9.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13조)
10. 학생 정보에 관한 권리(조례 제14조)
11.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조례 제15조)
12.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조례 제16조)

13.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조례 제17조)
14. 학생과 관련한 학칙, 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조례 제18조)
15. 학생의 권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조례 제19조)
16.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조례 제20조)
17.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조례 제21조)
18.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조례 제22조)
19. 급식에 관한 권리(조례 제23조)
20. 건강에 관한 권리(조례 제24조)
21. 징계 및 절차에서의 권리(조례 제25조)
22.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26조)
23. 소수 학생의 권리(조례 제27조)

제2절 학생의 의무

제9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다른 학생들이 쾌적하게 학습할 권리를 존중하여 교내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권을 소중히 여긴다.
2. 학생들은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교우관계】

1.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 사이에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한다.
2. 교우 사이에 욕설, 비어를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제13조【폭력예방】

1. 학생들에게는 신체상의 어떤 폭력도 허용되지 않으며, 정신적 폭력(집단 괴롭힘, 성적 희롱, 언어폭력, 사이버폭력)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
2. 집단 괴롭힘 등 모든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을 행하지 않아야 하며, 방조하지도 않아야 하며, 서로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 차렸거나, 발생했을 때에는 가까이 있는 교사에게 알려야 하며, 학교는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양성평등】

1.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2.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생들은 양성평등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제15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교내 휴식 및 여가시간에는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며, 이용 규칙을 따라야 한다.
2. 교외 외출 시에는 담임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3. 다른 학생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4. 자신의 취미 활동 및 공동체 활동을 권장하며 건전하지 못한 사행 놀이(화투, 트럼프, 트레이딩 카드, 도박, 물품거래, 돈 거래, 사이버머니 거래)는 금한다.

제16조 【용의복장】

1.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며, 초등학생으로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복장과 두발을 하도록 한다.
2. 기타 단체복의 착용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며, 실시 및 실습에 적합한 복장을 취한다.
3.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7조 【학급 사회활동】

1. 학생은 학급환경 정돈 및 안정된 학급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2. 학생은 학급 사회활동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3. 학생은 학급 비품 관리에 책임을 지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8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학생자치회 담당교사에게 신고를 하여서 하도록 한다.

1. 교내에서 외부인과 회합 또는 행사를 하고자 할 때
2. 특별실을 수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휴일 또는 방과 후 시간에 활동하고자 할 때

제19조 【출결사항】

1. 특별한 사유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못 할 때에 학부모는 출결 통지를 담임교사에게 할 의무가 있다.
2. 학교장허가 체험학습(연간 20일), 학교간교류체험학습(국내 연간 1개월) 시에 학부모는 학생들의 안전에 최대한 주의할 의무가 있다.

제20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포천노곡초등학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바른 언행에 힘써야 한다.
2. 정규교과 시간에 본교 이외의 단체행사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교통규칙, 공중도덕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4.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5. 유해 매체(음란물, 폭력물, 흡기, 화기 등)를 소지하지 않는다.
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물질을 휴대·흡입·복용하지 않는다.

제21조 【사이버 생활】 포천노곡초등학교 학생들은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협박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의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22조 【정보·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컴퓨터는 수업 중 학습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해야 한다.
2.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의 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업시간에 사용은 불허한다.
3. 휴대전화 및 정보 통신 기기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상대방 비방 및 욕설, 따돌림 등의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본교의 휴대용 통신 기기 사용 규정에 따른다.
4. 교내 및 교외 학습활동 중에는 MP3와 같은 휴대용 음향기나 게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학생 자치회】 포천노곡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생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학생 자치회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시행한다.
2. 학생들은 자치회 활동 및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경제적, 신체적, 학업성적 그리고 성별 등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3. 임원 선출과 운영 및 관련 사안은 모두 ‘학생 자치회 규약’에 따른다.
4. 학생 자치회 대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바와 같이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가진다.(조례 제6절)

제 4장 학생생활지도

제1절 생활 지도

제24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시 교통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6. 실내 질서를 위해 복도에서는 우측통행, 한 줄 통행을 지도한다.
7. 교실 밖 실내에서는 흰색 실내화를 신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실내에서는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도록 금한다.
9. 칼, 가위, 송곳 등등의 위험한 물건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금한다.
10. 등하교 시 자전거.킥보드로 통학 또는 놀이를 금한다.
11. 일과 중 교내에서 야구를 할 수 없으나, 소프트 볼을 이용한 캐치볼은 가능하다(야구배트, 야구공 사용 금지). 일과 후에는 보호자 동행시 게임을 할 수 있다.
12. 학생생활교육 지도는 교사가 직접 한다. (학생자치회 임원이 지도하지 않는다.)

제25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정기적인 과련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힘쓴다.
2. 진학 및 직업교육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제26조 【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7조 【훈계.훈육】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생활 지도를 할 시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體罰)은 금하며,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와의 상담, 인권친화적 학생 생활 지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교육적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제28조 【보호자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한다.

제 2절 학생생활교육

제29조 【학생생활 교육 원칙】 학생생활교육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생활교육은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30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목적】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실행하고 학생생활교육은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이끌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 31조 【구성 및 운영】

1. 구성 및 임무

- 1) 각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을 둔다.
- 2)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되고, 위원은 5인으로 전문상담교사<부장교사>, 보건교사, 학급담임교사 2인으로 정한다.
-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4)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5) 교원 중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2. 기능

-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3. 운영

- 1)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4)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5)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6)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7)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 8)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각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써 마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 9)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은 각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써 마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제32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및 의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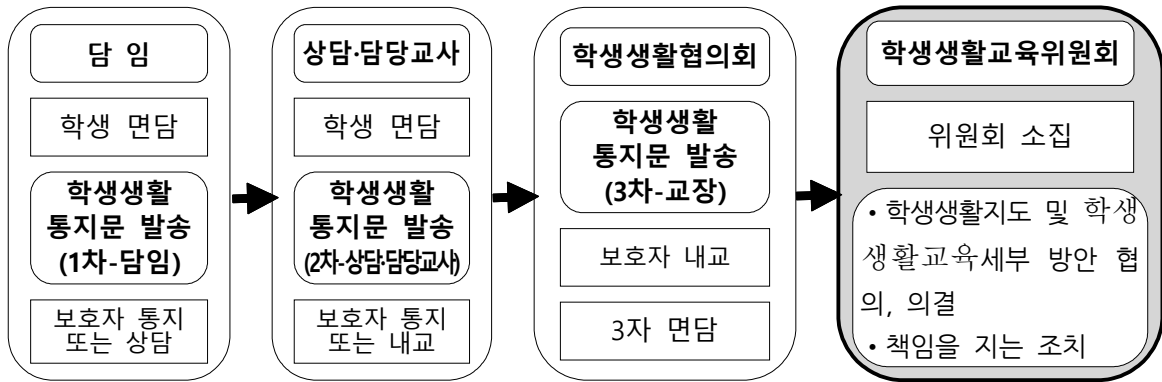
제33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사안】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학생생활교육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며 그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학습권 침해(수업 방해, 학습 지시사항 거부 및 과제 상습 불이행)
2. 학교 기물 또는 구성원의 물건 파손, 절도
3. 시험 중 부정행위
4. 교직원 및 학교 교육 활동 지도(봉사)자에 대한 불손한 태도
5. 학교내.외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 사안 (폭력이라 함은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폭력을 의미함)
6. 기타(게임.인터넷.음란물.휴대전화 중독, 흡연 및 음주, 약물 오남용)

제34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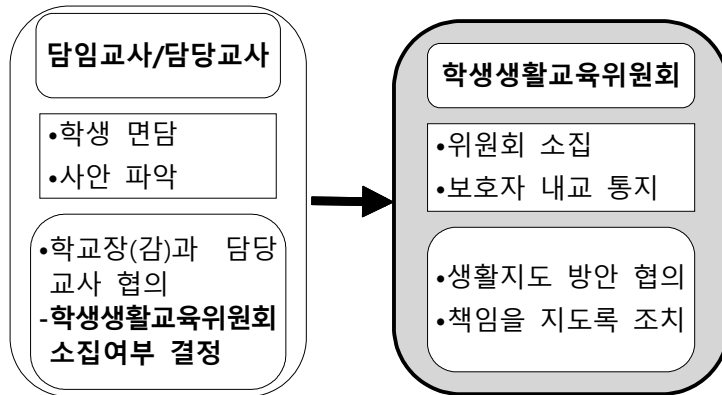
1. 일반적 사안의 절차

위 33조 1~5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학생이 우발적으로 잘못을 하거나 생활태도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경우는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2. 중대한 사안의 절차

위 33조 1~5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학생이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질러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생활태도 개선의 기회를 주었으나 개선의 여지가 부족한 경우, 학칙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며,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경기도 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2013년 7월)에 준한다.



제35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학생생활교육 결정】 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와 기간, 방법 및 세부 사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학생생활교육의 유보, 감경 및 해제의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3.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학생징계는 반드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소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년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경미한 사안 처분이나 약식으로 징계처분을 금지한다.
 - 가. 학교 내의 봉사
 - 나. 사회 봉사

위의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 내 봉사 처분의 경우 학습권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내 봉사로는 아침맞이 교문인사, 도서관 책 정리, 급식실 봉사, 학급도우미, 캠페인 참여 등 이에 준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제 36조 【징계 조치 별 내용 및 유의사항】

1. 학교 내의 봉사

- 1)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 3)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2. 사회봉사

- 1)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 3)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3. 특별교육이수

- 1)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다만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 3)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을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4. 출석정지

- 1)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1. 학교내의 봉사(학습권 제한 금지)

제37조 【재심의 부의】 관련 학생은 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초·중·등 교육법 제 18조 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2항)

제38조 【학교 내 재심청구】

1. 교육위원회의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제기는 청구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며 1회로 제한한다.
3. 교육위원회 조치 결과는 조치이행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4.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39조 【학생생활교육 내용 통보】 학생생활교육 및 징계가 확정되면 학생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 및 징계 내용을 서면 통보한다. 단, 학생생활교육처분 결과는 공고할 수 없다.

제40조 【추수지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수지도를 한다.

1.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는 학생생활교육 학생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 등을 일주일 간격 또는 그 이상의 기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상담을 한다.
2.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는 선도 학생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과의 상담 누가 기록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5장 개정방법

제41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발의 또는 학생자치회 대표자위원회 2/3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시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 전체 교직원 회의, 학교홈페이지 공지, 공개토론회 등의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3.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 위원회는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된 8~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 또한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4.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 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만들 수 있으며, 최종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다. 이때, 학생 대표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확정된 규정안은 학생, 교원, 학부모에게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포하며, 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42조 【기타 규정】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결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1일에 개정되어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11. 5. 26일에 개정되어 교육감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13. 6. 24일에 개정되어 교육감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13. 11. 25일에 개정되어 교육감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17. 9. 10일에 개정되어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19. 6. 20일에 개정되어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19. 11. 26일에 개정되어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21. 4. 12일에 개정되어 시행한다.